예 산 총 칙

2016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209,356,816	36,280,704
일반회계	1,116,893,867	33,506,816
특별회계	92,462,949	2,773,888
기타특별회계	92,462,949	2,773,88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4,661,166	139,835
수질개선특별회계	8,641,285	259,239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19,382,496	581,475
기반시설특별회계	457,620	13,729
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	92,593	2,778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150,987	64,530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7,135,858	214,076
주택사업특별회계	99,378	2,981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47,019,612	1,410,588
지하수특별회계	2,821,954	84,659

제 2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안)"과 같다.

제 3 조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201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3,561,128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승인 이후 교부되는 국도비와 교부세는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